

여성 장기고용대책 마련 시급하다

퇴사압력에 시달리는 광주기든백화점 주부사원들

“여직원이 10년 20년 근무한다고 생산성이 향상되는가? 오래 될수록 나이 어린 여직원을 부려먹으려 한다”

여성들의 근무의욕에 찬물을 끼얹은 이같은 발언은 두산산업 한 간부가 여직원 장기근속 수당을 요구하는 노조측에 답변한 내용으로 장기근속 여성들에 대한 사회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근로기준법 제5조),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평등법 제6조의 2)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이 법의 현실 적용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남자 사원과의 동일한 임금은 커녕 장기근무여성들이 무형·유형의 퇴사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9월 29일 광주기든백화점은 “3년 이상 근속한 여사원에게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겠다”고 조합측에 통보했다.

순환근무제는 어느 회사나 의례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지만 3년 이상 근무 여사원 81명 가운데에는 주부사원, 임신중인 사원 다수가 포함돼 있어 회사측의 의도를 의심케 하고 있다.

즉 광주 가든백화점 측은 법률 및 단체협약에 ‘임신중인



▲ 지난 5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고용불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집중토론을 개최했다.

주부사원을 경미한 작업에 배치해야 된다’고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인 사원을 업무가 과중한 부서에 배치시켜 장기근속자를 자연퇴사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든노동조합측은 여사원 전환배치는 ‘성차별, 인사권남용’이라고 규정, 10월 11일 단체협약위반 등의 혐의로 회사를 고소했다.

가든백화점 노동조합측은 단결된 노력으로 여직원 장기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두산산업 문정숙 씨(30세)의 경우 재벌기업을 상대로 외롭게 법정투쟁을 전개

하고 있다.

90년 7월 27일 두산산업에 의해 부당해고를 당했던 문정숙 씨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회사측은 다시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사건의 시발은 90년 두산산업 임금협상시 노조측에서 여직원들의 장기근속 수당을 요구한 것으로부터 비롯됐다.

협상시 회사측 간부가 “여직원이 10년 20년 근무한다고 생산성이 향상되는가?...”라고 답변한 내용이 사내게시판을 통해 공개되자 여직원회인

과 동시에 문정숙 씨를 회유시키겠다는 계산이 저변에 깔린 것이다”고 분석했다.

문정숙 씨는 “이번 일은 여직원들의 차별대우에 항의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므로 회사측이 다시 항소하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애초에 사건의 시발점이 된 여직원들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문 씨의 법정투쟁은 더욱 외로워지고 있다.

이같은 사건은 사회에 만연된 여성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적, 집단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강제력있는 법안들이 마련돼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고용 불안정 문제는 이제 여성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91년의 중심과제를 ‘평생 평등노동권 확보’로 정하고 10월 5일, 91년 여성주간행사중에 가진 집중토론 ‘악화되는 여성고용,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해 날로 심각해지는 여성노동자 고용불안정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견정 성균관대 강사는 “그동안 노동시장 내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기혼여성을 그 위에 미혼여성, 남성노동자를 위치지워 성별, 혼인 상태별 직업분리와 차별이

행해졌다”고 지적하며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고용보험제의 법제정과 운영과정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 여성고용의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인 노동자가 실업으로 인해 그 소득의 원천을 상실한 경우, 보험제도에 의해 일정기간에 걸쳐 소득을 보상하고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유지 및 확보하는 데 기본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인력난에 허덕이며 더 많은 여성인력의 진출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을 임시적 고용대상으로만 설정한다면 여성의 사회진출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여성의 역할이 주변적인 노동에만 국한될 때 여성들은 고용불안정이라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여성고용안정화 대책은 여성들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의 해결을 위한 개별, 집단적 움직임이 사회전반에 걸쳐 파급될 때 정책적으로도 여성들에게 유리한 법안이 마련될 것이기에 문정숙 씨 사건, 가든백화점 사건 등의 추이를 모두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김문란 기자)